



## 근로장려금 집행 성과

###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금!

지난 5년간 321만 가구에게 2조4천684억원을 지급함  
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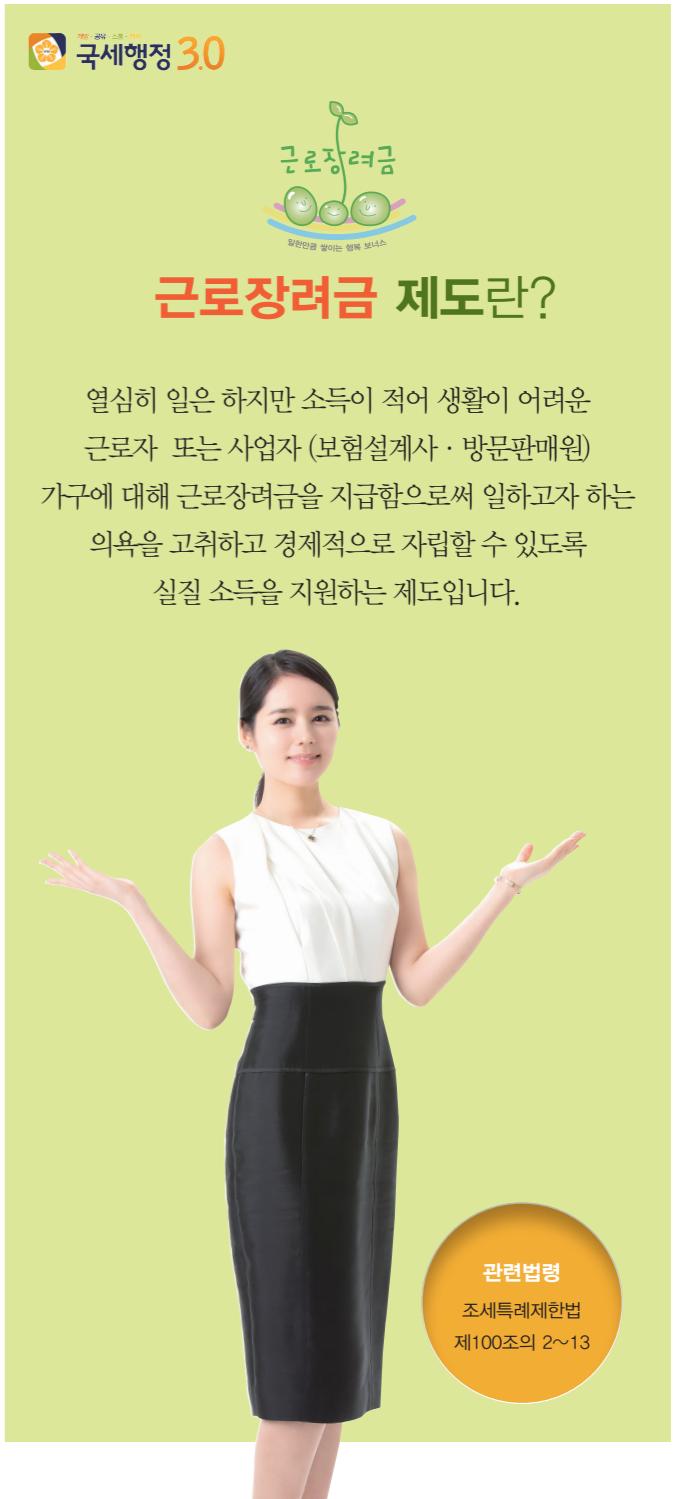
앞으로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계속하여 넓혀갈  
예정입니다.

- 2014년부터는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,  
최대지급액을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.
-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 
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, 2016년에는  
50세 이상,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.
- 현재는 사업소득자 중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에 대하여  
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,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  
(전문직 제외) 전체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.

#### 연도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

[단위 : 천 가구, 억원]

지급연도	가 구	지 급 액
2009년	591	4,537
2010년	566	4,369
2011년	522	4,020
2012년	752	6,140
2013년	783	5,618
합 계	3,214	24,684





# 근로장려금

## Earned Income Tax Credit

### 1 근로장려금 신청자는?
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(부양자녀 등 요건)**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(95.1.2.이후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(53.12.31.이전출생)일 것
- (총소득 요건)**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

가구원 구성	총소득기준금액
단독가구	1,300만원
홀벌이 가족가구	2,100만원
맞벌이 가족가구	2,500만원

- \* 단독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
- \* 홀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
- \* 맞벌이 가구 :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- \* 2014년 신청분에 한하여 3자녀 이상 홀벌이 가족가구의 경우도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

- (주택 요건)**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함

- (재산 요건)**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

\* 재산 : 주택, 토지와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 등)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

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

1)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(생계·주거)를 받은 자

2)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제외)

3)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\*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(부녀자공제)와 중복 적용 불가

### 2 신청하여야 할 내용은?

-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,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기재된 근로장려금 신청서

### 3 신청 기간과 방법은?

- 신청기간** : 2014년 5월 1일~6월 2일까지

- 신청방법** : ARS 신청, 휴대전화 신청, 모바일 웹 신청,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
  - \* ARS, 휴대전화, 모바일 웹 신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



#### ARS 신청

전화하기 1544-9944 → 본인 확인 → 신청내용 확인 → 연락처 입력 → 환급계좌 등 입력 → 신청 종료



#### 휴대전화 신청

이동통신3사 MMS(LMS·SMS)발송 → 개인정보제공 동의 → 신청내용 확인 → 신청 종료



#### 모바일 웹 신청

국세청 통합 앱설치(M-국세청) → 근로장려금 선택 → 본인 확인 → 신청내용 확인 → 신청 종료



#### 인터넷 신청

컴퓨터 [www.eitc.go.kr](http://www.eitc.go.kr) 접속 →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→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→ 신청 종료

### 4 5월에 신청하지 않으면?

-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(9월 2일까지)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 금액의 90%만 지급합니다.

## Q&A

### Q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은?

-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13년도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 
단, 정확한 금액은 **근로장려금 산정표**에 의하여 계산됩니다.

#### ■ 단독가구인 경우 (만 60세 이상인 경우)

총급여액 등	근로장려금
600만원 미만	총급여액 등 × 600분의 70
600만원 이상 ~ 900만원 미만	70만원
900만원 이상 ~ 1,300만원 미만	70만원-(총급여액 등-900만원)×400분의 70

#### ■ 홀벌이 가족가구인 경우

총급여액 등	근로장려금
900만원 미만	총급여액 등 × 900분의 170
900만원 이상 ~ 1,200만원 미만	170만원
1,200만원 이상 ~ 2,100만원 미만	170만원-(총급여액 등-1,200만원)×900분의 170

#### ■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

총급여액 등	근로장려금
1,000만원 미만	총급여액 등 × 1,000분의 210
1,000만원 이상 ~ 1,300만원 미만	210만원
1,300만원 이상 ~ 2,500만원 미만	210만원-(총급여액 등-1,300만원)×1,200분의 210

-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「총 급여액 등」의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가구원 구성	단독가구	홀벌이 가족가구	맞벌이 가족가구
최소금액	128,570원	79,410원	71,420원

### Q 총급여액 등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
- 총급여액 등은 2013년 연간 부부의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·방문 판매원으로 받은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등 특정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
###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?

- 국세청에서 확인한 총급여액 등이 귀하가 알고 계신 금액과 일치할 경우에는 증거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